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11. 27. 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. 11. 15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4. 11. 18.

다. 상정일자: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24. 11. 27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고용협력과장 한경미】

가. 제안이유

위원회 개최 빈도가 낮고 비상설 운영으로도 위원회 운영 목적 달성이 가능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(안 제16조)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 도모
- 2) (안 제17조~제20조) 위원회 비상설 전환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 삭제, 문구 수정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권하나)

○ 동 조례 개정안은 2024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- 본 개정안은 위원회 개최 빈도가 낮고 비상설 운영으로도 위원회 운영 목적 달성이 가능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.
-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사회적경제지 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설치됨.
- 위원은 당연직과 구의원을 포함한 위촉직 15명 이내로 구성되며, 주요 심의·자문사항은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,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,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·운영 및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,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임.
- 집행부서(고용협력과)는 사회적경제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하는 것보다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, 실 제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에 불과하여 운 영 실적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.

【 표1. 사회적경제위원회 개최실적 및 회의 결과 】

구분	2022년	2023년	2024년(11월현재)	
개최여부	০ ('22.7.21.)	×	×	
회의결과	주요안건: 마포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	미개최 사유 : 안건 부존재	미개최 사유 : 안건 부존재	

○ 또한, 정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서울시와 타 자치구도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는 추세1)이므로.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비상설로 전 환하고자 하는 것임.

-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제3항을 신설하여, 위원회는 심의・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・운영하며 위원회는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해산한다고 규정하여 비상설로 운영함을 명시함.
- 안 제17조제6항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르게 규정하였는 바, 이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방지하고자 신설하였음.
- 그리고, 안 제17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위원회 비상설 전환에 따른 불 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음.
- 이와 같이 검토한 바, 개최 실적이 저조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주요계획을 심의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화하면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반적인 약화를 불러올 수 있음.

¹⁾박원순표 사회적경제센터도 없어지나... 서울시, 자치구 지원사업 중단[뉴스핌 2023. 2. 1.]

【 표2.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 현황 】

(2024. 11. 12. 기준, 단위: 천원)

2025	2024	2023	2022	2021	2020	비고
166,670	250,000	250,000	179,000	169,000	230,000	자치구 예산지원 최대 9년 단계
구)166,670	구)250,000 구	7,250,000	시)33,000	시)84,000	시)110,000	적 지원 1~3년차: 시
		구)250,000	구)146,000	구)85,000	구)120,000	90%이상 지원 8~9년차 : 자치 구 80%가량 전담

 마포구에서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안 및 개 선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【 표3.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】

총계	,	사회적기업		협동조합			마을	자활
	소계	예비	인증	소계	일반	사회적	기업	기업
315	64	26	38	244	195	49	5	2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론요지: 없 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8. 기 타: 없 음

붙임 1 관련법령

■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· 투명성 · 효율성 향 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구에 설치되는 상설 및 비상설 위원회에 적용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설치내용)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.

- 1. 설치 목적 및 기능
- 2. 위원의 구성 및 임기
- 3. 존속 기한(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)
- 4. 위원의 결격사유, 제척·기피·회피(구민의 권리·의무와 관련되는 인가·허가,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·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)
- 5. 회의의 소집 시기.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
- 6.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
- 7. 분과위원회, 실무위원회 등을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